

신규 정회원 가입 안내

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(이하 관리공단)은 『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성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입주(변경)계약 및 공장등록, 기업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

관리공단 정관 제10조(회원의 자격) 제②항에 의거 2025년도 신규 정회원의 가입 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2025년 1월 13일

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

(직인생략)

1. 안내 대상자

- 아래의 정회원 자격을 신규로 갖춘 자

2. 정회원의 자격(정관 제10조 제②항)

1. 단독공장을 보유하고 제조업, 지식기반산업,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 제12조의 정회원의 권리의무에 동의한 자
2. 공단 창립 후 관리공단에 출자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3. 지식산업센터 입주사협의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자로 정회원이 아닌 자
4. 가입회비를 납부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5. 지식산업센터를 900m²(계약면적) 이상 보유하고 제조업, 지식기반산업,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 제12조의 정회원의 권리의무에 동의한 자

3. 회원의 권리 의무(정관 제12조 제①항)

1. 정회원은 공단에 대하여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총회의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2. 정회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3. 정회원은 산업단지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하여 공동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.(2005년 2월 이후 납부사실 없음)
4. 정회원은 산업단지 내 입주회원사의 지원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공동운영비를 납부

할 수 있다.(2005년 2월 이후 납부사실 없음)

5. 회원은 공동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6. 회원은 납부한 금원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. 다만, 착오로 징수 된 금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7. 회원은 공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관 또는 복지회관 건립 등에 출자할 수 있다. 단, 출자자는 원금에 대한 지분만을 갖는다.(2005년 2월 이후 납부사실 없음)

4. 제출서류

1. 정회원 가입신청서 1부 [별지서식1]
 2. 제출기간 및 제출처
 - 1) 제출기간 : 2025년 1월 13일(월) ~ 1월 17(금) 17시
 - 2) 제출처 :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(fax : 050-4926-0207, 031)750-2818, 2819)
 - 3) 문의처 :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(전화 : 031) 750-2804, 2807)
- ※ 정회원 가입신청서에 꼭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.
핸드폰 번호와 생년월일의 미기입으로 총회진행에 있어 안내, 선거권 및 의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.

5. 기타사항

본 안내문을 받으신 회원은 정관 제10조 제②항 제5호의 자격을 갖춘 회원입니다.
정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은 첨부된 「정회원 가입신청서」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서에서 정보가 누락되면 공단 행사안내, 총회안내, 정회원의 권리행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.